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제51호 2021. 12. 17(금)

조 례

| | | | |
|-----------------|------------------------------------|-------|-----|
| ○ 남원시 조례 제1712호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 |
| ○ 남원시 조례 제1713호 |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0 |
| ○ 남원시 조례 제1714호 |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0 |
| ○ 남원시 조례 제1715호 |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 | 26 |
| ○ 남원시 조례 제1716호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32 |
| ○ 남원시 조례 제1717호 |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39 |
| ○ 남원시 조례 제1718호 |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 | 45 |
| ○ 남원시 조례 제1719호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 ----- | 50 |
| ○ 남원시 조례 제1720호 |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64 |
| ○ 남원시 조례 제1721호 |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71 |
| ○ 남원시 조례 제1722호 |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 | 74 |
| ○ 남원시 조례 제1723호 |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76 |
| ○ 남원시 조례 제1724호 |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 | ----- | 79 |
| ○ 남원시 조례 제1725호 | 남원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82 |
| ○ 남원시 조례 제1726호 |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 | 85 |
| ○ 남원시 조례 제1727호 |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 | 92 |
| ○ 남원시 조례 제1728호 |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 95 |
| ○ 남원시 조례 제1729호 |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 | 102 |
| ○ 남원시 조례 제1730호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106 |
| ○ 남원시 조례 제1731호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20 |
| ○ 남원시 조례 제1732호 |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122 |
| ○ 남원시 조례 제1733호 |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127 |
| ○ 남원시 조례 제1734호 |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33 |
| ○ 남원시 조례 제1735호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 | 144 |
| ○ 남원시 조례 제1736호 |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 등에 관한 조례 | ----- | 170 |
| ○ 남원시 조례 제1737호 |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 ----- | 178 |
| ○ 남원시 조례 제1738호 |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196 |
| ○ 남원시 조례 제1739호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02 |
| ○ 남원시 조례 제1740호 |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 | 221 |
| ○ 남원시 조례 제1741호 | 남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25 |
| ○ 남원시 조례 제1742호 |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 | 230 |
| ○ 남원시 조례 제1743호 |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 ----- | 235 |
| ○ 남원시 조례 제1744호 |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243 |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681호 남원시 아·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245
- 남원시 규칙 제682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65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2459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7
- 남원시 공고 제2021-2464호 공시송달공고(왕정동) ----- 276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2 호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의체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청년센터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를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지원센터”를 각각 “청년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청년공간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사용료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종전의 제19조)의 제목“(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등)”을“(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을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을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청년공간”이란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u></p> |
|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주거 등 관련 부서의 실·과장 이상 <u>공무원</u>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u>위촉한다.</u></p> <p>1. ~ 6. (생략)</p> |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공무원 중</u> ----- ----- <u>위촉하되,</u> <u>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④ (생략)</p> <p>제13조(청년협의회 설치·운영)</p> <p>① (생략)</p> <p>② <u>협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신설></p> <p><신설></p> |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청년협의회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협회의 구성원은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u>협회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
| <p>제15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u>청년지원센터</u>(이하 “<u>청년지원센터</u>”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u>청년지원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u>청년지원센터</u>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2. ~ 8. (생략)</p> <p>③ 시장은 <u>청년지원센터</u>를 직영하거나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p> | <p>제16조(청년센터 설치·운영) ①</p> <p>-----</p> <p>----- <u>청년센터</u>(이하 “<u>청년센터</u>”-----</p> <p>-----.</p> <p>② <u>청년센터</u>-----</p> <p>-----.</p> <p>1. <u>청년센터</u>-----</p> <p>-----</p> <p>2. ~ 8. (현행과 같음)</p> <p><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신 설></u></p> | <p><u><삭 제></u></p> <p><u>제15조(청년공간 설치·운영) ①</u> <u>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한다.</u></p> <p><u>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④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공간의 사용료 요율은</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6조 ~ 제18조 (생략)</p> |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u>⑤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남원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u> 2. <u>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
| <p>제19조(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등)</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u>주택임차 지원방안 등</u>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 <p>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u>주택임차 지원방안 등</u> -----.</p> <p>③ (현행과 같음)</p> |
| <p>제20조 (생략)</p> <p>제21조(청년단체 등 지원) 시장은 <u>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u></p> | <p>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p> <p><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② (생략)</p> <p><u><신설></u></p> | <p>제23조(재정지원)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24조(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시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p> |
| <p><u>제24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청년정책과</u>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 <p><u>제25조 (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5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 관련 단체를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p> <p>제26조 (생략)</p> | <p><u>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6조(포상) ① ----- ----- ----- -----.</p> <p>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3 호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을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2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4조(중전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2항제2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4항”을 “제3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월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조·제4조·제8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령 서 약 서 (제3조 관련)

- 주 소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위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남원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됨에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문 실적부 (제6조 관련)

| 구분 종류 | 사 건 명 | 의뢰 연월일 | 의뢰 내용 | 회신 연월일 | 회신 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문종류 : 소송사건, 법령해석, 행정심판, 이의신청, 기타 등으로 구분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 동의서 (제8조 관련)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동의자 : 변호사 ○ ○ ○(인)

남원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남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p>제1조(목적) ----- <u>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u> ----.</p> |
| <p>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u>2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생략)</p> <p>2. <u>제7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u></p> <p>3. (생략)</p> <p>④ <u>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본조 전문개정 2013.12.12.]</p> | <p>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 ----- ----- 4 명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2. (현행 제3호와 같음)</p> <p><u><삭 제></u></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설></u></p> | <p><u>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u> <u>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u> <u>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u> <u>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u> |
| <p><u>제3조(고문사항) (생략)</u></p> <p><u><신설></u></p> | <p><u>제4조(고문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p> <p><u>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u>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u></p> |

| 현행 | 개정안 |
|---|--|
| <p><u>제4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생략)</u></p> <p>②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u>제3조</u>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4. (생략) 5. <u>제2조제4항</u>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7. (생략) | <p><u>문번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u></p> <p><u>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u></p> <p>②-----</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제4조</u>----- ----- ----- 3. 4. (현행과 같음) 5. <u>제3조</u>----- ----- 6. 7. (현행과 같음) |
| <p><u>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u>제3조</u>에 따라 자문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u></p> | <p><u>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u></p> <p>---- <u>제4조</u>-----</p> <p>-----</p> <p>-----</p> <p>----- <u>반기별</u>-----</p> <p>-----</p> |
| <p><u>제6조 (생략)</u></p> <p><u>제7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u></p> | <p><u>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u></p> <p><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음 각 호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p> <p><u>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u></p> <p><u>2. 시의 소송사건 수입현황 및 소송 실적</u></p> <p><u>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신 설></u></p> | <p><u>제8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u></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4 호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으로, “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을 “수행에서”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장”을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며, “70퍼센트이상”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로, “공무원”을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로 한다.

제3조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시 또는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당 60,000원 이내”를 “1명당 300,000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u>시장(그 산</u> | 제1조(목적) | ----- | <u>남원시 또는</u> |

| 현행 | 개정안 |
|--|---|
| <p>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u>수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공적이</u>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u>남원시장</u>----- -----<u>수행에서</u>----- ----- ----- -----.</p> |
| <p>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u>공무원</u>.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u>한한다</u>.</p> | <p>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 <u>각 호</u>----- ----- <u>공무원으로 한다</u>. -- ----- -----<u>한정한다</u>.</p> |
| <p>1. <u>시장</u>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70퍼센트 이상</u>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p> | <p>1.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u>70퍼센트 이상</u>-----</p> |
| <p>2. <u>시장</u>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u>70퍼센트 이상</u>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p> | <p>2. <u>시 또는 시장</u>----- -----<u>70퍼센트 이상</u>----- -----</p> |
| <p>②제1항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u>공무원</u></p> | <p>② ----<u>각 호</u>----- ----- ----- ----- -----<u>공무원에게 지</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u>2인이</u> 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u>1인</u>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고르게 분배한다.</p> | <p><u>급한다.</u>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u>2명</u> 이상----- -----<u>1명</u>----- -----.</p> |
|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u>시장을</u>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생략)</p> <p>③ 포상금은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 <p>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u>시</u> 또는 <u>시장</u>----- -----<u>각 호</u>-----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호</u>----- -----.</p> |
|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u>각호</u>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p>1. 행정소송(본안) <u>1인당 60,000 원</u>이내</p> <p>2. 민사소송(본안) <u>1인당 60,000 원</u>이내</p> <p><u>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u>이내</p> | <p>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 -----<u>각 호</u>----- -----. 1. ----- <u>1명당 300,000 원</u>이내 2. <u>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 원</u>이내</p> |

| 현행 | 개정안 |
|---|--|
| <p><u>내</u> <u><신 설></u></p> <p>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u>1</u> <u>인당 20,000원 이내</u></p> <p>② (생략)</p> | <p>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u>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u></p> <p>4. -----1 <u>명당 100,000원 이내</u></p> <p>② (현행과 같음)</p> |

남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5 호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규칙의견 검토위원회)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남원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제출 검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제5조 관련)

| | | | |
|--|---|-----------------------|--|
|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성명 (성별: 남 □, 여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명 | |
|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 |
|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남원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원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②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일·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
2.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성취될 때까지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으로 현제도 및 지침에 따라 해결이 곤란한 민원
3. 허위민원의 반복제기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
4. 성희롱·폭언·협박·폭행·기물파손·신체적 상해·점거·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
5. 여러 차례 담당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 행위를 방해하거나 일반사회 관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는 민원
6. 민원인 개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유발하는 민원
7. 비현실적인 요구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거나 민원처리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는 민원
8.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요구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 의무)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업무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피해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업무 부서

장 또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특이민원 주관 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특이민원 주관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의무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1. 각 사무실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및 문구 게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공무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 예산, 감사, 특이민원 총괄, 민원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남원시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노동조합 소속 임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특이민원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

3. 제7조 및 제11조 관련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4.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

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며,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 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기준 (제7조 관련)

| 지원 구분 | 근거 | 지원 한도 | 세부기준 |
|--------------------------|------------|-------------|--|
| 심리상담 및 의료비 | 제7조제1호및제2호 | 50만원 | 1. 병원 진료비 2. 약제비 3. 입원비, 치료비 4. 심리상담 비용 |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 제7조제3호 | 4시간 |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
| 법률상담 형사고발 손해배상소송 등 | 제7조제4호 |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 |
|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제7조제5호 |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 |
|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 제7조제6호 | 5일 이내 |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범위 내 |
| 그 밖의 사업 | 제7조제7호 | 예산의 범위 내 | |
| 안전시설 확충 | 제11조 | 예산의 범위 내 | |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 | | |
|-----------------------------|---|-----|-----------|
| 발 생 일 | | 부서명 | |
| 피해공무원 | 직 급 : 성 명 : (성별:) | 연락처 | |
| 민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명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 | |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 |
| 지원신청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호 :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2호 : 의료비(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input type="checkbox"/> 3호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input type="checkbox"/> 4호 : 법률상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등 <input type="checkbox"/> 5호 :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input type="checkbox"/> 6호 :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 | |
| 증명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 |
| 피해확인 (부서장 또는 읍면동장 승인)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원시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7 호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이·통장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입학·재학 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이·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 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 또는 훈향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본 장학금 지

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3조 (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통장의 자녀, 이·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 1인당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때 교육과정별이라 함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말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① 연간 장학생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장학생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

급한다.

제8조 (지급의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그 부모인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 부모인 이·통장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해당 학교장 및 총장으로부터 장학금 지급중지 통지가 있을 때
 4. 그 밖에 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 등을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관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시장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 | | | |
|-----|---------------|---------|---------|
| 계 | 학업성적 또는 특기 | 이·통장 경력 | 이·통장 상훈 |
| 100 | 50 | 40 | 10 |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 학업성적 우수분야 | 중·고등 학생 |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 | | | |
|----------------------|-----------------------------------|-----------------------------------|----------------------------------|-------------------------|----------------------------------|-----------------|
| | | 90%이상 | 80%이상 90%미만 | 70%이상 80%미만 | 60%이상 70%미만 | 50%이상 60%미만 |
| | 대학생 | 4.0이상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2.5이상 ~3.0미만 | 2.0이상 ~2.5미만 |
|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 시의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 |
| 점 수 | | 50 | 40 | 30 | 20 | 10 |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이·통장 경력

| 근속연수 | 4년이상 5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비 고 |
|------|--------------|--------------|--------------|--------------|-----|
| 점 수 | 40 | 30 | 20 | 10 | |

※ 경력 산정 기준일 : 이·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계획 읍면동 통보문상 현재

다. 이·통장 상훈

| 훈 격 |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도지사 | 시장 |
|-----|-----|------|--------|----|
| 점 수 | 10 | 9 | 8 | 7 |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발생분
- 관련조문 : 남원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 비용추계의 전제 : 장학금 소요분
 - 중 학 생 : 20명 × 200,000원 = 4,000,000원
 - 고등학생 : 12명 × 500,000원 = 6,000,000원
 - 대 학 생 : 40명 × 1,000,000원 = 40,000,000원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5년 | 합계 |
|---------|---------|-------|-------|-------|-------|-------|-----|
| | | | | | | | |
| 세출 | 장학금및학자금 | 50 | 30 | 30 | 30 | 30 | 170 |

※ 교육과정별 1회 지급 제한 규정으로 연차별 예산 소요액 감소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170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부대의견 : 없음
-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2년) | 2차년도 (2023년) | 3차년도 (2024년) | 4차년도 (2025년) | 5차년도 (2026년) | 계 | |
|---------------------|-----------------|-----------------|-----------------|-----------------|-----------------|---------|---------|
| 세 입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지방세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의존재원 | | | | | | | |
| 세 출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인건비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재원 조달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지방세 | 50,000 | 30,000 | 30,000 | 30,000 | 30,000 | 170,0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8 호

남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원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 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19 호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한루원 일원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예촌 문화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공간”이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시 또는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기능)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

한다.

1. 예촌마당
2.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관리사 포함)
3. 황희초당
4. 관서당마당
5. 예촌The이음
6. 예루원마당

② 이 조례에 따라 문화공간의 시설 명칭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화관광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
2. 각종 문화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사업
3. 문화관광 공간 및 창작 연습 공간 제공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공공행사·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

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 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개인의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문화공간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문화공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부대시설 포함)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2. 국가·도·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또는 발표로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경우와 교육 및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학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 관내 어린이집
3.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문화회관 및 학생교육원
4.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100%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50% 반환

② 시설사용 개시 일에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사고를 대비한 안전조치 및 사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는 그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사람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4조(입장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가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권의 발매 및 관리는 시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장(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시가 주관하는 공연의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취소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해당 공연 전일 18시까지 예매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증명서를 확인 후 입장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

4.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

⑥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은 사용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에는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한다.

제1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사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다른 사
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시간) 문화공간의 사용허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시 ~ 12시

2. 오후: 12시 ~ 18시

3. 야간: 18시 ~ 22시

4. 1일: 09시 ~ 22시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

제19조(안전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시설의 점검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체계 및 행동요령 규칙을 자체계획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위탁관리) 시장은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한 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허가신청서(제6조제1항관련)

| |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 단 체 명 | 전 화 | 일 반() - | | | |
| | | | 휴대폰() - | | | |
| 성 명 (대표자) | 성 별 | □남 □여 | 생년월일 (사 업 자) | - | | |
| 사용목적(행사명) | | | | | | |
| 사 용 시 설 | 공 간 명 | <input type="checkbox"/> 예촌마당 <input type="checkbox"/>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input type="checkbox"/> 황희초당 <input type="checkbox"/> 관서당마당 <input type="checkbox"/> 예촌The이음 <input type="checkbox"/> 예루원마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기본시설 | | | | | |
| | 부대시설 | | | | | |
| 공 연 시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 사 용 횟 수 | 년 월 일 시 분까지 | 오전 : 회 | 합 계 | |
| | | | 오후 : 회 | () 일 | | |
| | | | 야간 : 회 | () 회 | | |
| 입장료 | 1. 유 2. 무 | | | | | |
| 첨부서류 | 행사 및 공연 계획서 1부 | | | | | |
| <p>「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p> | | | | | | |
| <p>남원시장 귀하</p>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용변경(취소)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

|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 단 체 명 | 전 화 | 일 반() | - | - |
| | 성 명 (대표자) | 성별 |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생년월일 (사업자) | - |
| 사용시설 | | | | | |
| 행 사 명 | | | | | |
| 변 경 사 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 사용일시 | | | | |
| | 공 간 명 | | | | |
| | 공간시설 | | | | |
| | 부대시설 | | | | |
| 변경사유 (취소사유) | | | | | |
| <p>「남원에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사용변경(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left;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남원시장 귀하</p>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용료감면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우편번호: | | | |
| | 단 체 명 | 전 일 반() - | | | |
| | | 화 휴대폰() - | | | |
| 성 명 (대표자) | 성별 □남 □여 | 생년월일 (사업자) | - | | |
| 행 사 명 | | | | | |
| 사 용 목 적 | | | | |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 |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 | |
| 사 용 시 설 | 공 간 명 | <input type="checkbox"/> 예촌마당 <input type="checkbox"/> 조갑녀살풀이명무관마당 <input type="checkbox"/> 황희초당 <input type="checkbox"/> 관서당마당 <input type="checkbox"/> 예촌The이음 <input type="checkbox"/> 예루원마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기본시설 | | | | |
| | 부대시설 | | | | |
| 감면사유 | | | | | |
| 「남원예촌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남원시장 귀하</p>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 (제4조제2항 관련)

| 공 간 명 | 위 치 | 기 능 |
|-----------------|-----------------|----------------------------|
| 예촌마당 | 남원시 쌍교동 212-3 외 |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 조갑녀살풀이 명무관마당 | 남원시 쌍교동 215-4 외 |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 황희초당 | 남원시 쌍교동 205-1 |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 관서당마당 | 남원시 쌍교동 216 |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 예촌The이음 | 남원시 쌍교동 185-2 외 |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 예루원마당 | 남원시 쌍교동 260 외 | 공연장, 문화관광체험, 전시, 교육프로그램 |

문화공간 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1. 예촌마당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150,000 | |
| 오전(09:00~12:00) | 50,000 | |
| 오후(12:00~18:00) | 50,000 | |
| 야간(18:00~22:00) | 5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2. 조감녀살풀이명무관마당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90,000 | |
| 오전(09:00~12:00) | 30,000 | |
| 오후(12:00~18:00) | 30,000 | |
| 야간(18:00~22:00) | 3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3. 황희초당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30,000 | |
| 오전(09:00~12:00) | 10,000 | |
| 오후(12:00~18:00) | 10,000 | |
| 야간(18:00~22:00) | 1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4. 관서당마당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90,000 | |
| 오전(09:00~12:00) | 30,000 | |
| 오후(12:00~18:00) | 30,000 | |
| 야간(18:00~22:00) | 3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5. 예촌The이름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90,000 | |
| 오전(09:00~12:00) | 30,000 | |
| 오후(12:00~18:00) | 30,000 | |
| 야간(18:00~22:00) | 3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6. 예루원마당

(단위 : 원)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 1일 | 150,000 | |
| 오전(09:00~12:00) | 50,000 | |
| 오후(12:00~18:00) | 50,000 | |
| 야간(18:00~22:00) | 50,000 | |

※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적용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0 호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남원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 활동(이하 “체육활동”이라 한다)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회유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춘향골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유치에 필요한 업무의 추진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체육 지원)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

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스포츠클럽(“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체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남원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남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남원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시 교육지원청 체육 업무 담당과장, 시 체육회 사무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 관계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7조(간사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이 된다.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1 호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감독·선수를 포함하여 7명”을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8명”으로 한다.

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

제4조제3항 중 “감독은”을 “지도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규모이상”을 “규모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코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한다.</p> <p>④ 단원의 정원은 감독·선수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p> | <p>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분하고,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로 구성한다</p> <p>④ ----- 지도자·선수를 포함하여 8명 -----.</p> |
| <p>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p> <p>③ 감독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지도,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선수 합숙소 관리 사항,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소속 선수의 관리를 총괄한다.</p> | <p>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도자는 ----- ----- ----- ----- -----.</p> |
| <p>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감독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p> | <p>제5조(단원의 자격) ----- ----- ----- -----.</p> <p>1.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 설></u></p> <p>2. 선수</p> <p>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전국 <u>규모이상</u>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p> <p>나. (생략)</p> | <p>2. <u>코치</u>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2급 이상의 해당 종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p> <p>3. ---</p> <p>가. ----- ----- ----- <u>규모 이상</u> ----- ----- -----</p> <p>나. (현행과 같음)</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2 호

남원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보건소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때에는 저장강박 의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조례 제 1723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남원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생계유지”를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로 한다.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험료

제7조 후단 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질병, 불의의 사고, 실업, 사업실패 등으로 <u>생계유지</u>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생 략) <p>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 략)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생 략) <p>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p> | <p>제3조(지원대상자)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생계유지</u> ----- ----- -----</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내용) ----- ----- -----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보험료</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7조(이의신청) -----</p> |

| 현행 | 개정안 |
|---|--|
| <p>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u>14일</u>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 ----- ----- ----- ----- <u>10일</u> ----- -----.</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4 호

남원시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이하“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동 분회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지원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7.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5 호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의 발전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에 따라 남원시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의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행정관서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효행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7조(사업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6 호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남원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

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제21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실비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7 호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8 호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조 제2항 단서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별표 1 위치란 중 “50”을 “50(금동)”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 |
|-----------|-------------------|--|

별표 2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한 복지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노인복지관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8. 4. 6.>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비 고 |
|-----------|-------------------|-----|
| 남원노인복지관 | 남원시 금동로 50(금동) | |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 남원시 요천로 1834(도통동) | |

[별표 2]

복지관 시설 이용시간(제8조관련)

| 구 분 | | 시 간 | 비 고 |
|-------------------|-----|---------------|-----------|
| 하절기 (3월 ~ 10월) | 평 일 | 09:00 ~ 18:00 | ※ 공휴일은 휴무 |
| | 토요일 | 09:00 ~ 13:00 | |
| 동절기 (11월 ~ 2월) | 평 일 | 09:00 ~ 17:00 | |
| | 토요일 | 09:00 ~ 13:00 | |

[별표 3] <개정 2018. 4. 6>

시 설 사 용 료(제9조 관련)

| 시 설 명 | 기 준 | 요 금 | 초과사용료 | 비 고 |
|----------|---|---------|------------|-------------------------------|
| 대강당 | 오전(08:00~12:00) 1회당 오후(13:00~17:00) 1회당 야간(18:00~22:00) 1회당 | 50,000원 | 10,000원/시간 | 1회기준 4시간 이내 |
| 냉·난방 시설 | 1회 | 30,000원 | 5,000원/시간 | 1회기준 4시간 이내 |
| 강당 부대기자재 | 1회 | 50,000원 | |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 조명 등 |
| 중강당 |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 50,000원 | |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 기타 프로그램실 | 오전(08:00~13:00) 1회당 오후(13:00~18:00) 1회당 | 30,000원 | | 1회기준 5시간이내 (냉·난방/부대기자재 포함) |

※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의 사용은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6조(후생사업) 복지관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당, 이·미용실, 컴퓨터실,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p> <p>1.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 <p>제6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 <p>제9조(운영 및 위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u>선정심의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p> <p>③ (생략)</p> | <p>제9조(운영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 -----</p> <p>③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 설></u></p> | <p><u>제12조(위탁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8.4.6.]</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u> <u>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u> <u>3. 그 밖에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u> <p><u>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 시설 및 장비는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
| <p><u><신 설></u></p> | <p><u>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u></p> |

| 현행 | 개정안 |
|--|--|
| <p><u>제13조</u>(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u>경우에는</u> 예외로 한다.</p> <p><u>제14조</u> (생략)</p> | <p><u>에 응하여야 한다.</u></p> <p><u>제14조</u>(손해배상) ----- ----- ----- ----- ----- ----- <u>경우는</u> ----- -----.</p> <p><u>제15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29 호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 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0 호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남원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

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영유아의 권익 보장

제5조(안전관리 체제 정비)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에는 영유아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 보호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영유아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과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보육에 있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보육정책위원회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산간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 제6조제3항의 비율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보육 교사 대표
4. 관계 공무원
5. 어린이집의 원장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 교육
9.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게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센터장, 학계전문가, 학부모대표, 어린이집 원장, 관계공무원,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센터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 연회비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대여자료의 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다문화가족
7.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하며,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 사용)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마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 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이하 “행복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누리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보육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기능) 행복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그 밖에 시장이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제30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구성) ① 시장은 행복누리센터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장(이하 “행복누리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1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 ① 행복누리센터장은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업무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32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규정) 행복누리센터장은 행복누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되, 행복누리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이용료 등) 행복누리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 시설사용,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의 시설설치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공립어린이집

제34조(설치)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특수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36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계약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시 관계법령,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때에는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9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

제41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2.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어린이집의 기능보강사업비
4.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6. 센터의 설치·운영비
7. 그 밖에 시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센터의 장, 교육훈련위탁 실시자 등에게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7장 보칙

제4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을 따르고,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

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남원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1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6.> <개정 2006. 11. 1., 2013. 4. 5., 2015. 8. 7.></p> <p>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4. 5.></p> | <p>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요금계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p> <p><삭 제></p> <p><삭 제></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2 호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
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
이집의 집단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

제5조(설치 및 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급식소 안전·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안전·영양 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3.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식사 지도
4.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영양 관리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컨설팅
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를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한다.

제7조(인력) 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시장이 반드시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8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영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법령 및 조례의 성실 준수
3. 협약사항의 충실 이행
4. 보조경비의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
5. 해당 시설의 전대(轉貸)·담보제공 및 시장의 승인 없는 개조·변경 등 금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보조 받은 때
2. 보조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3.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
4.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② 시장은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경비보조 등)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센터 운영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3 호

남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지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시장은 남원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

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과정에 의견 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 및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등 세부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1. 장난감도서관 등의 이용료등

| 종류 | 구분 | 이용료 | 연회비 | 비고 |
|--------------|-------|---------------|--------------------------------------|---|
| 가. 장난감 도서관 | 개인 | 없음 | - 개 인 : 20,000원 - 시 설 등 : 50,000원 | 대출한 장난감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장난감을 대출한 자가 부담한다. - 개인 1회 2점, 시설 등 1회 5점 |
| | 시설·단체 | 없음 | | |
| 나. 체험놀이실 | 개인 | 영유아 2,000원 | 없음 | 1. 1회 이용시간은 60분으로 한다. 2. 보호자 및 인솔자는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
| | 시설·단체 | 1인기준 1,000원 | | |
| 다. 시간제 보육실 | 영유아 | 보건복지부 지침 준용 | 없음 | |
| 라. 유아지원 프로그램 | 개인 | 1회 10,000원 이하 | 없음 |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료비 및 교재비를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단체 이용기준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
| | 시설·단체 | 1회 5,000원 이하 | | |

※ 시설종류 : 남원시 소재 노유자시설, 장애인시설

2. 다목적 교육실 등의 이용료

| 구분 | 단위 | 이용료 | 비고 | |
|------------|--------------------|---------|---|---------|
| 가. 다목적 교육실 | 1시간 | 10,000원 | 1.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2.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를 가산한다. | |
| 나. 다목적 홀 | 1시간 | 50,000원 | | |
| 다. 냉·난방비 | 다목적 교육실 | 1시간 | | 5,000원 |
| | 다목적홀 | 1시간 | | 20,000원 |
| 라. 기본음향 | 1회 마이크 4개(유선2,무선2) | 없음 | | |
| 마. 유선마이크 | 개당/회 | 6,000원 | | |
| 바. 무선마이크 | 개당/회 | 20,000원 | | |
| 사. 무대조명 | 1시간 | 30,000원 | | |
| 아. 빔프로젝트 | 1회 | 30,000원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4 호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
4. 지역사회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
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
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중 “치매치료비용”을 “치매관리사업 비용”으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을 “비용을 환수할”로 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남원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남원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u>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u></p> <p><u>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u></p> | <p><u>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다.</p> <p>3. “<u>초로기 치매</u>”란 만 60세 미만 사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p> <p>4. “<u>치매 선별검사</u>”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 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p> <p>5. “<u>치매 진단검사</u>”란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에게 치매 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전문의 진찰을 말한다.</p> <p>6. “<u>치매 감별검사</u>”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p> <p>7. “<u>전문 의료기관</u>”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p> <p>8. “<u>치매 치료</u>”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p> | |

| 현행 | 개정안 |
|---|--|
| <p><u>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p>9. <u>“본인 부담금”이란 제8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 대상) ① <u>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u></p> <p>2.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u></p> <p>② <u>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시 보건소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선별검사·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이하 “치매 검진”이라 한다), 치매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제2항에 따른 치매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검진기관과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 <p>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남원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② <u>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u></p> <p>2. <u>치매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u></p> <p>3. <u>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u></p> <p>4. <u>치매에 관한 홍보·교육</u></p> <p>5. <u>치매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u></p> <p>6. <u>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u></p> <p>7. <u>그 밖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치매 검진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치매환자 및 그 가족 2.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3.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와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단체 |
| <p>제5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치매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

| 현행 | 개정안 |
|--|--|
| <p>② 개인이 치매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p> |
| <p>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합한 경우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 <p>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p> <p>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p> <p>4. 지역사회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p> <p>5.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p> <p>6.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p> <p>7.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p> <p>8.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p> <p>9.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 구입 비용</p> <p>10.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u>치매치료비용</u>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u>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u> 있다.</p> <p><신 설></p> | <p>제6조(환수조치) ----- -----<u>치매관리사업 비용</u>----- ----- <u>비용을 환수할</u> -----.</p> <p>제8조(이용 제한) <u>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3호에 따른 <u>감염병환자</u> 2. 센터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u>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u> 3. 센터 이용에 따른 <u>질서를 지키지 않은 치매환자</u>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을 <u>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p>제9조(포상) <u>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u></p> |
| <p><신 설></p> | <p>제9조(포상) <u>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u></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설></u></p> <p><u>제8조(시행규칙) (생략)</u></p> | <p><u>수 있다.</u></p> <p><u>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u></p> <p><u>제11조(시행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u></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5 호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 등에 따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맡아 처리하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

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사용료, 배출부과금 및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말한다.

7.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운영자가 한다.

② 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부담금의 산출, 부과, 징수업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 관리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오·폐수의 유입

제6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적정운영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입처리를 거부하거나, 유입처리 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처리시설 설계용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 시킬 때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적정설치여부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수·보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수 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관리자는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 배수시설의 개수·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장)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무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측정계 등의 시설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12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기기,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장치 부착은 스크린,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⑦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인기관에 재교정이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군수

7. 생태독성(TU)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3조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면제되나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차 처리 후 유입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담금의 부담

제16조(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또는 대형 개·보수 소요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대상이 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을 해당사항 발생 시 또는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③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 도산 등의 사유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가동 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 저유량 유입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가 처리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

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부과 대상자의 납부의무 중단에 관하여는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사용료의 추정)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여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배출부과금의 부담)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수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제24조(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2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등의 부과 방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제26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관리자는 제2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월별로 산정 부과하되, 당해 월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재투자적립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①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새 장비 또는 새 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사무를 위탁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시설재투자 완료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이 잘못 산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월 분 부담금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9조(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부담금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강제징수)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2조(자료의 제출명령)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처리구역에서 오·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4조(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유입처리 승인 취소 처분)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2. 이 조례에 의한 관리자(운영자 포함)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장 입주기업 협의회

제36조(설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제3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사업자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협의회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3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규정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9조(의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 AS = (P \times R) \times \frac{BLi}{BLs}$$

- AS : 입주 사업자 설치부담금
- P : 처리시설 설치비 = 처리시설 원인자 부담대상 사업비
-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 BLi : 오·폐수배출사업자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BOD + TOC + SS) × 유량
- BLs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 (BOD + TOC + SS) × 처리용량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사용료 산출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1)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담기준 : 오·폐수 배출량, 오염부하량에 따라 결정한다.

나. 산출근거

$$* CS = 0.5M \left(\frac{QI}{QT} + \frac{QOI}{QOT} \right) \times Z$$

- CS : 사업자별 부담금액
- M : (월간 유지관리비 + 관로유지관리비)
 - ※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 ※ 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TOC}{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TOC}{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Z : 조정계수 = (오 · 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 · 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에 적용한다.

나.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 방법

$$\text{m}^3\text{당 사용료} = (M2 + M3) / \text{폐수유입량}$$

- M2(시설재투자적립금) : 오 · 폐수관로의 재정비,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재투자적립금 $M2 = E_i \times F_i \times 12\text{개월}$

- E_i : 오 · 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_i : 10/10,000

-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 ·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 · 폐수량($\text{m}^3/\text{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 · 폐수량의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text{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times 0.8(\text{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 ℓ/일(기숙사 인원은 200 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폐수의 오염농도 산정방법

■ 폐수배출사업자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와 오염농도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관리자의 관리·감독으로 공인기관 또는 수탁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폐수오염농도의 하한 기준선은 사업장의 오수농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오수배출사업자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TOC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SS 100mg/ℓ (기숙사, 주거지역은 200mg/ℓ)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폐수 오염농도를 가감할 수 있다.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산출기준

$$* BS = (F \times R) \times 0.5 \left(\frac{QI}{QT} + \frac{QOI}{QOT} \right) \times Z$$

- BS : 사업자별 시설재투자적립금 부담액
-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 R : 물가상승율(부과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 적용
- Q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량
- QOI : 개별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TOC}{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QOT : 전체사업자 오·폐수 배출오염부하량

$$= \left(\frac{BOD + TOC}{2} + SS + T-N + T-P \right) \times \text{유량}$$

- Z : 조정계수 = (오·폐수유입량 / 처리시설 용량) × 1.25
 단, Z 가 1보다 클 경우 1을 적용

2. 적용방법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비용

$$F = \text{총 공사금액} \times 10 / 10,000$$

- 총 공사금액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 처리시설 준공이후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 | | | | |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 | |
|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업종 | 주생산품 | | |
|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 | |
| | 건물면적(동별) | 부지면적 | | m ²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mg/L, TOC : mg/L, SS : mg/L, T-N : mg/L, T-P :
 mg/L, 총대장균군수 : 개/ml,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 | | | |
|---|---|------------------|--|
| 관 리 번 호 제 호 |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변경) 통보서 (제6조제2항 관련)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승인내용 및 조건 | | | |
| | | | |
| <p>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 | | |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

| | |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 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 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 계획

[별지 제4호서식]

| | | | |
|---|-----------------------------|------------------|--|
| 승 인 번 호 제 호 |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승인내용 및 조건 | | | |
| <p>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남 원 시 장 (인)</p> | | | |

[별지 제5호서식]

| | | | |
|----------------|-----------------------------|------------------|--|
| 승 인 번 호 제 호 |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제7조제6항 관련)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 | | | |
|----------------|----------------|------------------|--|
| 검 사 번 호 제 호 |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성 명(대표자)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인)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제10조 관련)

| | | |
|----------------|------------------|--|
| 신 고 인 | 상호 또는 명칭 | |
| | 성 명 (대표자) |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전 화 번 호 | |
|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일 | |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 및 제26조 등 관련)

| 납부고지서 | | | | | | | 영수필통지서 | | | 영수증 | | |
|---------------------------------------|-----|-----|----|-----|-----|--|---------------------|--|-------|---------------------|--|-------|
|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 | | | | | |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 | | 년 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 | |
| 업체명 | | | | | | | 업체명 | | | 업체명 | | |
| 대표자 | | | | | | | 대표자 | | | 대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계 | | | 계 | | |
| 납부기간 | | | | | | | 납부기간 | | | 납부기간 | | |
| 납부기관 | | | | | | | 납부기관 | | | 납부기관 | | |
| 입금계좌번호 | | | | | | | 입금계좌번호 | | | 입금계좌번호 | | |
| 세입과목 | | | | | | | 세입과목 | | | 세입과목 | | |
| 부담근거 (단위:mg/l) | | | | | | | 영수일자 | | 년 월 일 | 영수일자 | | 년 월 일 |
| 유 량 | BOD | TOC | SS | T-N | T-P | | | | | | | |
| m ³ /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년 월 일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년 월 일 |
| 남 원 시 장 | | | | | | | 0 0 0 0 남원시청 지점 | | | 0 0 0 0 남원시청 지점 | | |

| | | | | |
|---|-----------------------|-------------------|-------------|-------------|
| NO. | 독 촉 장 (제30조 관련) | | | |
| 상 호 | | 성 명 (대 표 자) | | |
| 주 소 (사업장) | | | | |
| | | | | |
| 구 분 | 체 납 기 간 | 체 납 금 액 | | |
| | | 계 | 부 담 금 |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남 원 시 장 (인) | | | | |
|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남원시 기업지원과(☎063-620-6653)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 |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재정수반요인

-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함

○ 관련조문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 예산 계획 : 530,000천원

- 인건비 : 232,891천원
- 경비 등 : 297,109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천 원)

| | 합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총비용 | 2,650,000 | 530,000 | 530,000 | 530,000 | 530,000 | 530,000 |
| 인건비 | 1,164,455 | 232,891 | 232,891 | 232,891 | 232,891 | 232,891 |
| 경비 등 | 1,485,545 | 297,109 | 297,109 | 297,109 | 297,109 | 297,109 |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전액 시비 편성

4. 그 밖의 사항

○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6 호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가공식품”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 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 ③ “사용권”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⑥ “관리권”이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 중 상표법 제 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별표 1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 사용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 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장소·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의안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사용신청 · 사용승인 및 사용상품의 품질관리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상품 또는 사용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제2조 관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7 호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다.

4. “로컬푸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먹거리로서 시 지역에서 전 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로컬푸드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공공급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 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산 농산물 생산의 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7.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 지원 등

제2장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경비,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남원시 학부모 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3. 남원시 학교영양(교)사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남원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원시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남원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남원시 복지급식(아동·노인·여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9. 그 밖에 공공급식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제1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로컬푸드 생산) ① 로컬푸드는 다품목 소량 생산, 연중공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조직화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소농,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생산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조직화

2. 지역순환농업 정착 및 촉진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3. 학교급식, 공공급식 생산단지 등 기획생산단지 조성 사업

4. 친환경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단지 조성

5. 여성농업인, 소생산자 공동체나 영농법인의 직거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로컬푸드 가공) 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농식품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기반 농식품 소기업 육성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로컬푸드 소비·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참여자의 소득증대 및 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이하 ‘장터’라 한다), 전문판매장(이하 “전문매장”이라 한다),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 등 로컬푸드 유통·소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가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이용촉진을 위하여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증진을 위한 소비자 조직화, 도·농교류 및 식생활 교육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로컬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성 보장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로컬푸드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절차 등 기준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공공급식 지원

제19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

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노인·장애인·아동·한부모 시설 등
2. 사회복지서비스사업: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3.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지원 기업체 운영 식당 등
5.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공사 의료원,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6. 국가기능 유지: 군대, 전·의경, 교도소·소년원, 외국인보호시설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20조(공공급식 계획수립)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사회적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2.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3.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로컬푸드 공급 확대
4.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5. 급식기관의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선진적인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선진사례 공동 벤치마킹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제21조(공공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공급식 분야에 있어 현물로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하고,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 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 농산물
3. 시 지역 외의 제2조제5호의 가에 해당하는 우수 농산물

제22조(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의 노력) ① 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급식 대상기관 등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구매하여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노력한다.

제5장 학교급식 지원

제23조(학교급식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4조(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먹거리 공적 조달체계 확립
2. 학교급식 품목군별 안전성 관리기준의 확립 및 강화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기획생산 및 농민가공 활성화 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비용이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6. 학교와 지역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5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8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및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 우수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고, 현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순서를 따른다.

제29조(지원신청) 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3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장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4. 로컬푸드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지원결정) ① 제29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에게 지급하고, 보육시설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지원대상자의 책무) ①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로컬푸드, 우수농산물, 국내산 순서에 따라 구입하고 학생의 급식비용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무상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6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3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2. 우수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신선도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6.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체험 사업 기획·추진

7.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 구축 및 판로 확대

8. 그 밖에 공공(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로컬푸드 소비저변 확대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면 기간 끝나는 날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음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이 상호 연결되고, 상생 협력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로컬푸드 이용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 정책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3. 위탁자 주체가 해산 하거나 사정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탁받은 자가 사용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5.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기간 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8 호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법 시행령 제10조”를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한다.(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율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를 “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

별표 5, 별표 6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본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시설이용 요금 감면 (제17조 관련)

| 감면대상 | 등 급 | | 감면율 | | 비 고 |
|----------------|--------------|------|-----------|-------------|---------------------------------|
| |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 국가보훈 대상자 | 1~3급 | 객실 | 50% | 10% | ※ 1인 1객실 한함 ※ 1인 1야영시설 한함 |
| | | 야영시설 | 20% | | |
| | 4~7급 | 객실 | 30% | | |
| | | 야영시설 | 15% | | |
| | 8~14급 | 객실 | 20% | | |
| | | 야영시설 | 10% | | |
| 장애인 | 중증 (1~3급) | 객실 | 50% | 10% | |
| | | 야영시설 | 20% | | |
| | 경증 (4~6급) | 객실 | 30% | | |
| | | 야영시설 | 15% | | |
|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 객실 | | 30% | 10% | |
| | 야영시설 | | 20% | | |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면제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면제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자(제22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의사상자. 다만,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 다.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 가. 등록포로
 -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관리인 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성수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u>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u></p> <p>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u>법 시행령 제10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리·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p> <p>①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는 별표 3 및 <u>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와 같다.</u></p> <p>②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에는 예외로 <u>한다.</u></p> <p>1. (생 략)</p> | <p>제5조(관리인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후단 삭제></u></p> <p>제12조(위탁관리) ----- ----- ----- <u>법 시행령 제10조제1항</u> ----- ----- ----- ----- ----- -----.</p> <p>제17조(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p> <p>① ----- ----- <u>별표 4</u> ----- -----.</p> <p>② ----- ----- ----- ----- <u>한다.</u> ----- <u>한다.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장애인 예약의 경우는 할인을 적용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생략)</p> <p>④ 삭제</p> <p>⑤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할인율은 <u>별표 3, 별표 4에 따른다.</u></p> <p>⑥ (생략)</p> <p>제18조(예약 및 해약) ①·② (생략)</p> <p><u><신설></u></p> | <p>③ (현행과 같음)</p> <p>⑤ ----- ----- <u>각각 별표 3, 별표 4, 별표 5와 같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8조(예약 및 해약)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장애인을 증명하여 시설 예약을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전날 한 해약에 대하여 예약금의 60퍼센트를 환불한다.</u></p> |
| <p>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법 시행령 제9조의7 <u>제2항제 1호부터 제16호까지</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3. 삭제</p> <p><u><신설></u></p> <p>4.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5. ~ 8. 삭제</p> <p>9. (생략)</p> | <p>제22조(입장료 면제) ① ----- ----- ----- -----.</p> <p>1. ----- <u>제2항 각 호</u> ----- -----</p> <p>4. <u>국가유공자 등 별표 6에 따른 면제대상자</u></p> <p><u>10.</u>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9. (현행과 같음)</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39 호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 관리”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림”을 “규정하여 도시숲”으로, “향상시켜”를 “향상시키고”로 한다.

제2조 중 “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생활숲”으로,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8호) 중 ““도시림”이란”을 ““도시숲”이란”으로, “말하며, 면 지역과”를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9호) 중 “생활림”을 “생활숲”으로 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9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수목

제4조 앞에 “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삽입한다.

제4조의 제목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도시숲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림 등”을 “도시숲 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제4조의2의 제목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을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으로 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5호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와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으로 한다.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종전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7조 앞에 종전 “제2장 가로수 조성”을 “제3장 가로수 조성”으로 한다.

제7조(종전 제5조)의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3항”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종전 “제3장 가로수 관리”을 “제4장 가로수 조성”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2항 중“제19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3항 중“매년3/4분기에 실시한다.”를 “연 2회 실시한다.”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중 “제1항”부터“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4항(중전의 제20조제7항)중 “제6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남원시 <u>도시림</u>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림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u>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내 <u>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u>(이하 “<u>도시림 등</u>”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p>제3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8. “<u>도시림</u>”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p> | <p>남원시 <u>도시숲</u>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u>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u>도시숲·생활숲</u> ----- (----- “<u>도시숲</u> -”-----)-- -----</p> <p>제3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에 따른다.</p> <p>1. “<u>도시숲</u>”----- -----</p> |

| 현행 | 개정안 |
|--|--|
| <p>협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u>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u></p> | <p>----- ----- <u>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u></p> |
| <p>9. <u>“생활림”</u>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 <p>2. <u>“생활숲”</u> ----- ----- ----- ----- ----- ----- -----</p> |
| <p><u>가. <신설></u></p> | <p><u>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u></p> |
| <p><u>나. <신설></u></p> | <p><u>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u></p> |
| <p><u>다. <신설></u></p> | <p><u>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u></p> |

| 현행 | 개정안 |
|---|---|
| <p>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생략)</p> <p>다. (생략)</p> <p>2. “갱신”이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p> <p>3. “보식”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p> | <p><u>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수목</u></p> <p>3. -----</p> <p>가. (현행과 동일)</p> <p>나. (현행과 동일)</p> <p>다. (현행과 동일)</p> <p><삭제></p> <p><삭제></p> |

| 현행 | 개정안 |
|--|--------------------|
| <p>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p> | |
| <p>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이하“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p> | <p><삭 제></p> |
| <p>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 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p> | <p><삭 제></p> |
| <p>6.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보호</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p> <p>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3.></p> | <p><삭제></p> |
| <p><신설></p> | <p><u>제2장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u></p> |
| <p>제4조(<u>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 <p>제4조(<u>도시숲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u>) ①----- ----- <u>도시숲 등의</u> ----- ----- <u>도시숲 등</u> ----- ----- -----</p> |
| <p>② <신설></p> | <p>② <u>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u></p> |
| <p>제4조의2(<u>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u>) ① <u>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u></p> | <p>제4조의2(<u>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u>) ① <u>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 -----</u></p> |

| 현행 | 개정안 |
|--|--|
| <p>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림</u>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u>도시림</u>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4. <u>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u> 5. 그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p>② ~ ③ (생략)</p> <p>④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림</u> 등의 조성·관리전문가 2. (생략) 3. (생략) 4. <u>도시림</u> 등의 업무담당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 | <p>----- ----- ----- -----<u>도시숲</u>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숲</u> ----- 2. <u>도시숲</u> ----- 3. (현행과 동일) 4. <u>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u> 5. -----<u>도시숲</u> ----- <p>② ~ ③ (현행과 동일)</p> <p>④ (현행과 동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숲</u> ----- 2. (현행과 동일) 3. (현행과 동일) 4. <u>도시숲</u> ----- ⑤----- |

| 현행 | 개정안 |
|--|---|
| <p>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도시숲</u>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⑥ ~ ⑨ (생략)</p> <p><u><신설></u></p> | <p>-----도시숲 ----- ----- -----</p> <p>⑥ ~ ⑨ (현행과 동일)</p> <p>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경관적·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u><신 설></u></p> <p>제2장 가로수 조성</p> <p>제5조~제9조 (생략)</p> <p>제9조(조성협의 등)① <u>법제21조제2항에 따라</u> ----- -----</p> <p><u><신 설></u></p> | <p>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p>제3장 가로수 조성</p> <p>제7조~제11조 (현행과 동일)</p> <p>제11조(조성협의 등)① <u>법12조제3항에 따라</u>----- -----</p> <p>제11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u>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u></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장 가로수 관리</p> <p>제11조~제24조 (생략)</p> <p>제12조(가지치기)① (생략)</p> <p>② -----제19조에 따라-----</p> <p>제17조(점검)① (생략)</p> <p>② (생략)</p> | <p>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장 가로수 관리</p> <p>제12조~제25조 (현행과 동일)</p> <p>제13조(가지치기)① (생략)</p> <p>② -----제20조에 따라-----</p> <p>제18조(점검)① (생략)</p> <p>② (생략)</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정기점검은 <u>매년3/4분기에 실시한다.</u></p> <p><u>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u></p> <p>① (생략)</p> <p>② <u>제13조 및 제14조에</u> 따라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목피해 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p> <p><u>제20조(비용부담)</u></p> <p>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p> | <p>③ 정기점검은 <u>연2회 실시한다.</u></p> <p><u>제20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u></p> <p>① (생략)</p> <p>② <u>제14조 및 제15조에</u> ----- ----- ----- ----- ----- ----- -----</p> <p><u>제21조(비용부담)</u></p> <p>① <삭 제></p> <p>② <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p> <p>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험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산출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으로 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시행한다.</p> <p>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 -----</p> | <p>③ <삭 제></p> <p>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④ 제3항에도----- -----</p> |

| 현행 | 개정안 |
|--|--|
| <p>-----</p> <p><u>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u> 시 장은 <u>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의</u>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 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 야 한다.</p> | <p>-----</p> <p><u>제2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u> -- --- <u>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u>----- ----- ----- -----</p>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제11조의2 관련)

|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 | | | | | |
|--|--------------|--------------------------|----|---------------------------|-------|---|
| 신청인 | 성 명(명칭) | | | 생년월일 | . . . | |
| | 주 소 | | | | 연락처 | |
| 사업 대상 | 가 로 수 위 치 | | | | | |
| | 수 종 | | 규격 |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 수량 | 본 |
| 이 식 사 유 | | | | | | |
| 작 업 방 법 | | | | | | |
| 작 업 기 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 | | |
| 부담금 | 금 액 금 | 원정() | | | | |
| | 납부기간 | | | | | |
|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남 원 시 장 귀 하 | | | | |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 | | | | |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 근거 붙임 가능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40 호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신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인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 도로 신설 및 단절된 보행자 도로 연결
6.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7. 주민 의견을 수렴한 포장공법 등의 개선사항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9.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열람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원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 조사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41 호

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로”를 “소유자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을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으로 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놀이형 어린이놀이기구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기구 이용자의 의견 청취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u>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u> 등으로서 「<u>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u>」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p> <p>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장소 또는 마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을 말한다.</p> <p>가.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p> <p>나. 「<u>도로법</u>」 제2조제2호가 목에 따른 휴게시설</p> <p>다. 「<u>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p> <p>라. 「<u>식품위생법</u>」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p> | <p>제2조(정의) ----- -----.</p> <p>1. ----- ----- ----- 제2조제1호에서 <u>규정한 놀이기구를</u>----- ----- ----- -----.</p> <p>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u>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2조에서 <u>규정한 시설 중 남원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 <u>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u> <u>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u> <u>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u> <u>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u> <u>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u> <u>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u> <u>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u> </p> <p>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u>소유자로</u> 관리책임이 있는 <u>자</u>,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u>자</u> 또는 그 <u>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u>를 말한다.</p> <p>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p> | <p>3. ----- -- <u>소유자로서</u> ----- -- <u>사람,</u> ----- ----- -- <u>사람 또는</u> ----- ----- <u>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사람을</u> ---.</p> <p>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p> |

| 현행 | 개정안 |
|--|---|
| <p>립)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③ (생략)</p> <p>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② (생략)</p> <p><u><신설></u></p> | <p>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u></p> <p>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8. <u>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의견 청취</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관리주체는 안전과 위생 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42 호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남원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300만원
3. 불에 탄 면적이 주택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최대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건물주인 경우에는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동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피해자 정보

| | | | | |
|----------|-------------------|--------|--|----|
| 주 소 | | | |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가 족 수 |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 | |
| 지급통장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 |

피해내역

| | |
|---------------------|----------------|
| 피해발생 위치 | |
| 피해 시설명 | |
| 피 해 면 적 | m ² |
| 피 해 구 분 (제5조 관련) | |
| 화재보험가입유무 | |

※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지원 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약속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통장)

남원시장 귀하

부 : 관할소방서 작성 화재증명원

* 첨부

화재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

1. 화재피해자 정보

| | | |
|-------|----------|--------|
|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 읍·면·동 |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 | |
|--------------------|-----------|
| ① 화재 발생 주소 | |
| ② 화재 발생 일시 | |
|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 | 면적 m^2 |
| ④ 소실면적 | m^2 / % |
| ⑤ 피해금액 | _____ 원 |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남원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사실 및 규모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조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인)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43 호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어탕 재료 생산기반, 가공, 서비스 및 체험관광을 포함한 6차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주재료인 미꾸리속 어종(이하 “미꾸리”라 한다)의 양식 및 유통관련 산업
- 나.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부재료인 시래기와 기타재료의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 다. 추어탕 및 추어요리 가공품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 라. 추어탕 및 추어요리 관련 외식산업 등 서비스 산업
- 마. 추어관련 체험 관광 산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2. “추어식품산업”이란 추어산업의 분야 중에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란 추어산업의 각 분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어식품산업 진흥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란 남원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복원 및 대량생산을 위한 치어생산, 보급과 미꾸리 대량생산 양식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미꾸리 양식단지”란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으로 남원 추어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미꾸리 치어생산, 추어탕 및 추어요리용 미꾸리 생산, 유통을 위한 거점 생산 단지를 말한다.

제3조(전문 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시산하 자체교육 기관을 통하거나 추어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토종 미꾸리 생산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을 위한 민간 종묘생산 업자의 육성 및 지원
2. 토종 미꾸리 생산 민간 양식장 조성 지원
3. 토종 미꾸리 종묘생산 및 성어생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5조(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차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 미꾸리 복원을 위한 어미(친어)의 확보
2.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
3. 생산한 토종 미꾸리 치어의 민간 양식장 분양
4. 토종 미꾸리 치어 및 성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5. 토종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등 부가기술 연구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시장은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토종 미꾸리 생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이전, 토종 미꾸리 생산·유통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1009-61번지 인근에 조성한다.

③ 미꾸리 양식단지의 운영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 관련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추어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행사 유치 및 지원)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행사 및 축제
2. 추어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및 평가회
3.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9조(지역특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① 시장은 추어산업이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역특화 브랜드의 외부 도용을 방지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지리적 증명표장,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확보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추어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남원시의 지역특화 음식인 추어탕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식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컨설팅
2. 추어식품산업 관련 식재료의 생산과 가공 관련 사업
3. 추어식품산업 유통과 마케팅 관련 사업
4. 추어식품산업과 연계된 체험 관광 관련 사업
5. 추어식품 외식 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사업

제11조(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추어식품산업의 분야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

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남원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추어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국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사업과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사업의 추진
2. 관련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3. 사업 진행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4. 각종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전반적인 사무 처리 기록 및 보고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4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2. 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그 밖에 추어식품산업 육성과 사업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추어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추어식품산업업무 담당국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추어산업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2명을 두되, 추어산업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어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지원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추어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추어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 ① 남원 추어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추어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어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추어산업 관련 보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조례 제 1744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징수한다.”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와 같은 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정방식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p> | <p>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 ----- ----- ----- ----- -----징수한다.(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연체 일수/월력(月曆)기준일수)</p>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규칙 제 681 호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이·통장은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읍·면·동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된 이·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통장 임명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선출되어 임명이 예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제3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통장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임기) ① (생 략)</p> <p>② 이·통·반장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신 설></p> <p>제9조(해임) (생 략)</p> <p><신 설></p> | <p>제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하되, 이·통장은 3회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 이외 접수자가 없는 경우, 연임제한 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p> <p>제9조(해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읍·면·동장은 형사사건으 로 기소(약식명령 청구는 제외) 된 이·통장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직무대 행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행 기간은 직무정지 기간 범위 내로 한정한다.</p> |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계획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읍·

면·동장

1. 임명예정인원: 0명

| 해당 통 | 세대수 | 관할지역 | 임명방법 |
|------|-----|------|------|
| 제○통 | | | 마을총회 |
| 제○통 | | | 면접심사 |

2. 임명방법

- 가. 마을총회를 통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
- 나. 면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임명
- 다. 접수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

3. 임명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통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신설 리·통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세 이상인 주민

4. 결격사유

-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임기 만료전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해 해임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교부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 나. 교부접수처 : ○○동(담당) 또는 홈페이지
-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 (1) 지원서1통 :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붙임 양식 참조)
- (2) 사진1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cm× 4.5cm) 1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3) 주민등록표 등본
- (4) 자원봉사경력 소명 서류 (해당자)
- (5) 상훈 관련 소명 서류 (해당자)

6. 세부일정

- 가. 서류접수 결과공고 :
- (나. 면접심사 :
※면접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다. 임명결과 공고 :
※ 홈페이지, 각종게시판에 공개 및 개별통보
- 라. 임명예정일 :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7. 선발 기준

- 가. 과반수 이상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다수 득표자
- 나. 면접심사에서 다득점자
※적임자나 접수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 임명한 자
- 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8. 기타사항

-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담당 (☎62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앞면)

| ()이·통장 지원서 | | | | | 사 진 (3×4cm) 6개월내 |
|--|--|---------------|--------|---------|------------------------|
| 성 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
| 성 별 | 남 / 여 | 직업 | | | |
| 도로명 주소 | | | | | |
| E-mail | | 전화 번호 | 휴대폰 | | |
| 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연령 | 직업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중학교 이상) | | 전공(학위)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부 서) | 직 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면 허 증 | | 시 행 처 | |
| | | | | | |
| 결 격 사 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기만료 전 규칙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해임되지 아니한 사람 | | | | |
| 본인은 상기 기재 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추후 지원서 상 기재 착오 및 누락, 허위사실 기재 등이 있을 경우 임명 취소 등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 | | | |
| ()읍·면·동장 귀하 | | | | | |

[별지 제2호 서식](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남원시에서는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지급 신청·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이·통장님들의 개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사항을 읽은 후 동의 여부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 - 임명절차 진행 - 본인식별 - 업무상 비상연락 | 이·통장 재직기간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임명절차 진행, 본인식별, 업무상 비상연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이·통장 취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보험자(보험회사)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단체상해보험 가입 계약 - 단체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제공사항은 단체상해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단체상해보험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후보)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결과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후보 접수 결과와 총회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 통·리 | 선출방법 | 성명 | 성별 | 주소 | 비고 |
|-----|-----------------|----|----|----|----|
| 제0통 | 마을총회 (일시/장소) | | | | |
| | | | | | |
| 제0통 | 면접심사 (일시/장소) | | | | |

[별지 제4호 서식]

남원시 00읍·면·동 00리·통 이·통장 추천서

총회일시 : . . . (: ~ :)

총회장소 :

참석인원 : 명

이·통장 피추천자 인적사항

| |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소 | | 연락처 | | 직업 | |

위 사람을 마을총회를 거쳐 00읍·면·동 00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1. 회의록 1부.

2. 회의참석자 명단 1부.

년 월 일

00읍·면·동 00리·통 주민 일동

00읍면동장 귀하

회 의 록

| | | | | | |
|-----|---------|-----|--|-----|--|
| 일 시 | . . | 장 소 | | 작성자 | |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 | | |
| | | | | | |

마을총회 참석자 명부

| 연번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별지 제5호 서식]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시 ○○읍·면·동 ○○이·통장이 임명(예정)됨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 .까지 읍·면·동사무소(담당 ○○○, 전화번호 ○○○○)에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읍·면·동장

| 통리 | 성명 | 주소 | 선출방법 | 임명(예정)일 | 임기 | 비고 |
|----|----|----|------|---------|----|----|
| | | | 마을총회 | | ~ | 연임 |
| | | | 면접심사 | | ~ | 신규 |
| | | | 직권임명 | | ~ | |

[별지 제6호 서식]

남원시 00읍·면·동 00리·통 00이·통장 추천서

후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택(), 휴대폰()

추천 서명

| 연번 | 성 명 | 주 소 | 서 명 | 비고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별지 제7호 서식]

이의신청서

| | | | |
|-----|--|------|--|
| 성명 |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소 | | | |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비방, 허위사실 기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읍면동에서 7일 이내 회신합니다.****

남원시 ○○읍·면·동 공고 제 - 호의 이·통장 임명(예정) 공고
에 대한 이의 사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임 명 장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00읍
·면·동 00이·통장으로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남원시 00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이·통장 임명(해임) 대장

[○○○읍·면·동]

| 리·통 | 인 적 사 항 | | | | | 임 면 사 항 | | | 비고 |
|-----|---------|------|-----|----|-----|---------|-----|------|----|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업 | 연락처 | 임명일 | 사임일 | 사임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발급번호 ○○읍·면·동 - 호

| | | | | |
|------|------|-------------------|------|-------|
|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 | 직 위 | | | |
| | 재직기간 | 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 | |
| 용 도 | | | | |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면·동장

| | | | | | |
|-----|----|----|-----|-----|--------------|
| 발급자 | 직급 | 성명 | (인) | 연락처 | ○○○-○○○-○○○○ |
|-----|----|----|-----|-----|--------------|

[별지 제11호 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읍·면·동]

| 발급번호 | 발급년월일 | 신 청 자 현 황 | | | 발급매수 | 용 도 | 발급자 | 비 고 |
|------|-------|-----------|-----|------|------|-----|-----|-----|
| | | 소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부채·물품 목록

| 부 채·물 품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 | |

2. 현물, 현금 및 예금 현 재고조서

| 종 별 | 현 품 | 현 금 | 예 금 | 비 고 |
|-----|-----|-----|-----|-----|
| | | | | |

3. 미결사항

위와 같이 ○○리·동의 사무를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 | | |
|----------|-----------------------|---|
| 인계자(전임자) | 이·통장 | ① |
| 인수자(신임자) | 이·통장 | ① |
| 입회자(공무원) | 직 성명 | ① |

[별표 1]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읍·면·동 리·통)

| | | | | | | |
|-----|--|-----|--|------|-----|------|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자택) |
| 주 소 | | | | | 연락처 | 휴대폰) |

□ 면접기준

| 심 사 항 목 (비 율)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 고 |
|----------------------|------|----|----|---|
| 1. 시정 관심도 (30%) | 우수 | 30 | | · 시 및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 시정 주요 정책 인지도 |
| | 보통 | 20 | | |
| | 미흡 | 10 | | |
| 2. 리·통장 능력 (10%) | 우수 | 10 | | · 지원동기, 적극성, · 이·통장 임무 숙지 여부 · 주민 파악 정도 · 정보통신 활용 능력 |
| | 보통 | 5 | | |
| | 미흡 | 3 | | |
| 3. 개인 태도 관련 (10%) | 우수 | 10 | | · 성품, 건강상태, 호감도 등 · 봉사 정신 · 인권 감수성 · 성평등 태도 및 관점 |
| | 보통 | 5 | | |
| | 미흡 | 3 | | |
| 총 계 | | 50 | | |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읍·면·동 리·통)

| | | | | | | | |
|-----|--|-----|--|------|--|-----|------|
|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주택) |
| 주 소 | | | | | | | 휴대폰) |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심 사 항 목 (비 율)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 고 (인정조건 등) |
|---|-------------------|-----|----|---|
| 1. 해당 통리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 간 (15%) | 8년 이상 | 15 | | · 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
| | 6년 이상 ~ 8년 미만 | 13 | | |
| | 4년 이상 ~ 6년 미만 | 11 | | |
| | 2년 이상 ~ 4년 미만 | 9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7 | | |
| 2. 최근 5년간 사회봉사활동 경력 (15%) (통리장 경력 제외) | 75시간 이상 | 15 | | ·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 체 ·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 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 | 50시간 이상 ~ 75시간 미만 | 13 | | |
| | 3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 11 | | |
| | 30시간 미만 | 9 | | |
| 3. 리·통장 활동 집중도 (10%) | 겸직 없음 | 10 | | |
| | 자유·자영업 | 8 | | |
| | 기타 | 6 | | |
|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 | 장관 이상 | 10 | | · 소명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
| | 도 단위 | 8 | | |
| | 시 단위 이하 | 6 | | |
| | 포상경력 무 | 4 | | |
| 5. 면접 (50%) | | 50 | | |
| 총 계 | | 100 | | |
| 확 인 자(읍·면·동 장) | | | | (인) |

남원시 이통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12월 17일

남원시 규칙 제 682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제16조(감면) ⑤ 군부대에 대해</u> <u>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u> <u>면제할 수 있다.</u> | <u><삭 제></u> |

남원시 공고 제2021 - 2459호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콜택시’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

나.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 별표1)

3.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5. ~ 2022. 1. 4.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통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pkc1398@korea.kr), fax(063-620-671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통과 교통행정팀(☎063-620-6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1. 1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과 장

1. 개정이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콜택시’의 운행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
- 나.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4조)
- 다. 이용자 부담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 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2. 15. ~ 2022. 1. 4.(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를 “이란”으로 하고,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운행한다”를 “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청한 일자와 시간”을 “요청한 시간”으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콜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제5조 관련)

| 구 분 | 이용자 부담요금 |
|--------------------------|-------------------|
| 회관에서 승강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편도) | 500원 / <u>1인당</u>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행복콜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u>마을회관과 버스승강장의 거리가 500m 이상인 마을을 말하며, 교통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포함한다.</u></p> <p>제4조(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u>운행한다.</u></p> <p>② 행복콜택시 운행방법은 행복콜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사전에 <u>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 읍·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u></p> |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동일)</p> <p>2. ----- ----- <u>이란</u> ----- ----- ----- ----- ----- <u>말한다.</u></p> <p>제4조(운행방법) ① ----- ----- ----- ----- <u>운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u></p> <p>② ----- ----- ----- <u>요청한 시간,</u> ----- ----- -----</p>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 | | |
|------------|--------|--|
| 1. 의견제출 목록 | | |
| 2. 제출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의 견 | | |
| 4. 기 타 | |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20. ~ 2022. 1. 4. (15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시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 소유자 현황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 | 성 명 | 주 소 | | 위 치 | 건축물현황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1.12.16.) | 강○수 | 남원시 왕정동 523 | 건축물 부존재 | 남원시 왕정동 523 | 주 1층 목조 주택 32㎡ 주 1층 목조 주택 19㎡ |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0.

남 원 시 장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 (전화번호:) |
| | 의견 | |
|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 락 처 : 063) 620-6597